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 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5,171,909	9,155,157
일반회계	278,962,908	8,368,887
특별회계	26,209,001	786,270
기타특별회계	26,209,001	786,2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79,703	41,391
수질개선특별회계	10,363,379	310,901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5,520,000	165,60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13,811	12,41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98,558	26,957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735,200	52,0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31,800	12,95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692,550	140,777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201,600	6,04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2,400	17,172

제 2 조 2014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25,83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